



교육부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2022년 폭력예방교육 참여율 제고 협조 요청(대학)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**학교의 장**은 관련 법령*에 따라 **교직원**을 대상으로 성희롱·성폭력·성매매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, **학생**을 대상으로 성폭력·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* 관련 법령: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1조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3,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
3. 각 대학에서는 **전체 소속 교직원(기관장 포함) 및 학생**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**적극적으로 실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4. 특히, 여성가족부로부터 **2021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**으로 통보받은 대학은 폭력예방교육 실시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부진기관 기준

기관장 교육 미이수, 고위직 참여율 70%미만, 종사자 참여율 75%미만, 학생 참여율 50% 미만 (단, 전년 대비 학생 참여율이 5%p 이상 상승한 기관은 부진기관에서 제외)

5. 아울러, '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' 변경으로 **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 대상 기관이 확대*** 시행되오니, 각 대학에서는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어 고위직 맞춤형 별도 교육이 차질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* ('21) 중앙행정기관, 지자체 → ('22) **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(산하기관, 소속기관 및 사업소 포함), 공직유관단체, 각 급 학교(초,중,고, 대학교 등)** (단, 종사자 100인 미만 대학은 제외됨('22년 한정))

- 붙임 1.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1부.
2. 2022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지침 변경사항 1부.
3. 고위직 별도 폭력예방교육 운영 안내 1부. 끝.

교 육 부 장 관



수신자 고등교육기관전체

주무관 김민지 행정사무관 강예일 양성평등정책 담당관 장인자 2022. 12. 6.

협조자

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-4461 (2022. 12. 6.) 접수

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,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(어진 / 동) www.moe.go.kr

전화번호 044-203-7116 팩스번호 044-203-6066 / candy2395@korea.kr / 대국민 공개